



##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( 약칭: 잔류성물질법 )

[시행 2018. 10. 16.] [법률 제15841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환경부 (화학물질정책과) 044-201-6782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」 및 「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」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,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 오염물질의 위해(危害)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1. 27.>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27.>

1. "잔류성오염물질" 이란 독성 · 잔류성 ·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」(이하 "스톡홀름협약"이라 한다) 및 「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」(이하 "미나마타협약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,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. "배출시설"이란 잔류성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물 · 기계 ·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3. "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"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 · 연소재 · 오니(汚泥) · 폐유 · 폐산 · 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해양(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)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1. 27.>

**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①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농약관리법」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3. 6. 4., 2016. 1. 27.>

②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폐기물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6. 1. 27.>

**제5조(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)**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 · 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를 거친 후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.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 2. 4., 2016. 1. 27., 2018. 10. 16.>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6. 1. 27.>

1.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  2.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
  3.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
  4.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
  5.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
  6.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16. 1. 27.]

**제6조(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)** ①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16. 1. 27.]

**제7조삭제 <2010. 2. 4.>**

**제8조삭제 <2010. 2. 4.>**

**제9조(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)** ①정부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호흡·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준으로서의 일일허용노출량을 설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27.>

②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일일허용노출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27.>

**제10조(환경기준의 설정)**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,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27.>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측정망의 설치·운영)**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·물·토양·하천퇴적물·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(이하 "측정망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27.>

②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 안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27.>

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·구역·측정항목·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12조(토지 등의 사용)** ①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·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**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·수출입·사용 금지 또는 제한 <개정 2016. 1. 27.>**

**제13조(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·수출입·사용의 금지와 제한)** ①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[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(A)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·금지물질과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. 이하 "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"이라 한다]을 제조·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 2. 1., 2013. 6. 4., 2016. 1. 27.>

1.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(A)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,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
  2. 시험용 · 연구용 · 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,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
    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,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.<신설 2012. 2. 1., 2016. 1. 27.>
    - 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[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(B)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 · 금지물질과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. 이하 "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"이라 한다]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 ·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 · 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<신설 2016. 1. 27.>
  1.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(B)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 ·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
  2.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(A)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 · 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 · 수출입하는 경우
  3.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(B)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  4. 그 밖에 시험용 · 연구용 · 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 ·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
    - ④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·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.<개정 2012. 2. 1., 2013. 6. 4., 2016. 1. 27.>
    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,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18. 10. 16.>
  1.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
  2.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
  3.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
- [제목개정 2016. 1. 27.]

###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<개정 2016. 1. 27.>

- 제14조(배출허용기준)** ① 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2. 1., 2016. 1. 27.>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령을 제 · 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③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(이하 "배출사업자"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(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)을 지켜야 한다.<개정 2012. 2. 1., 2017. 1. 17.>
  -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을 할 수 있는지,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1. 27.>

- 제15조(배출시설의 설치기준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(이하 "배출허용기준"이라 한다)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07. 4. 11., 2007. 4. 27., 2012. 2. 1., 2017. 1. 17.>

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· 신고 또는 변경허가 · 변경신고

2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· 신고 또는 변경허가 · 변경신고
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· 변경신고
4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· 신고 또는 변경승인 · 변경신고

**제16조(개선명령 ·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)**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(이하 "개선명령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<[개정 2016. 1. 27., 2018. 6. 12.](#)>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. <[개정 2018. 6. 12.](#)>

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,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. <[신설 2018. 10. 16.](#)>

**제17조(과징금처분)**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, 대외적 신용, 고용,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<[개정 2018. 6. 12.](#)>

② 배출시설의 종류 · 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, 과징금의 부과 ·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 · 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톤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 <[개정 2011. 7. 21.](#)>

⑤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 ·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 · 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된 과징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.

**제18조(배출원과 배출량 조사)**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· 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다. <[개정 2016. 1. 27.](#)>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[개정 2016. 1. 27.](#)>

③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, 절차,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[신설 2012. 2. 1., 2016. 1. 27.](#)>

[[제목개정 2012. 2. 1.](#)]

**제19조(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)** ① 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「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,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, 측정방법,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[개정 2012. 2. 1., 2016. 1. 27.](#)>

②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사의 방법·범위·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[\[개정 2012. 2. 1.\]](#)

③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. [\[개정 2016. 1. 27.\]](#)

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.

⑤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·보존할 수 있다.  
[\[신설 2012. 2. 1., 2018. 10. 16.\]](#)

[\[제목개정 2016. 1. 27.\]](#)

**제20조(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·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)** ①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, 파손,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, 또는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2. 2. 1., 2016. 1. 27., 2017. 1. 17.\]](#)

②배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환경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사업자에게 사고의 확대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[\[개정 2016. 1. 27.\]](#)

**제21조(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·관리 등)**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. [\[개정 2016. 1. 27.\]](#)

[\[제목개정 2016. 1. 27.\]](#)

**제22조(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)**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. [\[개정 2016. 1. 27.\]](#)

[\[제목개정 2016. 1. 27.\]](#)

**제23조(재활용의 제한)** ①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6. 1. 27.\]](#)

②삭제 [\[2016. 1. 27.\]](#)

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. [\[개정 2012. 2. 1., 2016. 1. 27.\]](#)

####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[\[개정 2016. 1. 27.\]](#)

**제24조(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)** 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을 함유하는 기기·설비·제품(이하 "오염기기등"이라 한다)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. [\[개정 2016. 1. 27.\]](#)

[전문개정 2012. 2. 1.]

**제24조의2(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)**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· 설비 · 제품(이하 “관리대상기기등”이라 한다)의 소유자는 제조사, 제조 연월일,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 ·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[본조신설 2012. 2. 1.]

**제24조의3(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)** 누구든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하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6. 1. 27.>

[본조신설 2012. 2. 1.]

**제25조(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)** ①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
2.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시 · 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1.>

**제26조(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)**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보칙

**제27조(시설 설치 등의 지원)**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· 운영하거나,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 · 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27.>

1.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
2.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 · 운반 · 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

**제28조(국제협력)** 정부는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· 공동조사 · 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며,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27.>

**제29조(보고와 검사 등)**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 · 수출입 · 사용 금지 또는 제한, 배출허용기준,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,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1., 2016. 1. 27.>

1. 제13조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 ·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
2. 배출사업자
3.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 · 운반 · 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

4. 제23조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

5.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소유자

6.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검사(이하 "검사등"이라 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등 개시 7일 전까지 검사등의 일시 ·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검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 ·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**제29조의2(연차보고서의 제출)** ① 시 · 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6. 1. 27.\]](#)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[\[본조신설 2012. 2. 1.\]](#)

**제30조(청문)** 환경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16조제2항 · 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2. 2. 1., 2018. 6. 12.\]](#)

**제31조(권한의 위임 · 위탁)**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· 도지사, 국립환경과학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[\[개정 2009. 2. 6., 2012. 2. 1., 2016. 1. 27.\]](#)

1. 제11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 · 운영에 관한 업무

2.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 · 배출량 조사에 관한 업무

3. 제27조제2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 · 운반 · 보관 · 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

4.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, 시료 채취 및 검사에 관한 업무(제14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 · 배출량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)

**제31조의2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**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\[본조신설 2012. 2. 1.\]](#)

## 제7장 벌칙

**제32조(벌칙)**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 · 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\[본조신설 2016. 1. 27.\]](#)

[\[종전 제32조는 제32조의2로 이동 <2016. 1. 27.>\]](#)

**제32조의2(벌칙)** 제16조제2항 · 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\[개정 2014. 3. 18., 2018. 6. 12.\]](#)

[\[제32조에서 이동 <2016. 1. 27.>\]](#)

**제33조(벌칙)**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 · 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. 27.]

[종전 제33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<2016. 1. 27.>]

**제33조의2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[개정 2012. 2. 1., 2014. 3. 18., 2016. 1. 27., 2018. 6. 12.](#)>

1. 삭제<2016. 1. 27.>
2.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3.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4.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
5.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5의2.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
6.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

[제33조에서 이동 <2016. 1. 27.>]

**제34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[개정 2012. 2. 1., 2014. 3. 18., 2016. 1. 27.](#)>

1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,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- 1의2.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 ·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2.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
3.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4.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5.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6.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 · 운반 ·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

**제35조(벌칙)**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*제36조(양벌규정)**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12. 2. 1.]

**제37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[개정 2012. 2. 1., 2016. 1. 27.](#)>

1.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· 보존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2.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3.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 · 운반 · 보관하거나 처리한 자(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[개정 2012. 2. 1.](#)>

1. 삭제<2016. 1. 27.>

2.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

③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·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·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· 시료채취 · 검사를 거부 ·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부과 · 징수한다.<개정 2012. 2. 1.>

⑤ 삭제<2012. 2. 1.>

⑥ 삭제<2012. 2. 1.>

⑦ 삭제<2012. 2. 1.>

#### **부칙 <제8292호,2007. 1. 26.>**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(배출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배출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**제3조** (측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 전에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7. 4. 11.>

②이 법 시행 전에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7. 4. 11.>

**제4조** (다른 법률의 개정) 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

#### **부칙 <제8371호,2007. 4. 11.>(폐기물관리법)**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····<생략>····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내지 제8조 생략

**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⑯ 생략**

⑯ 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호 중 "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"을 "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"으로 한다.

부칙 제3조제1항 중 "제30조의3제2항"을 "제31조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30조의3제3항"을 "제31조제3항"으로 한다.

⑰ 내지⑳ 생략

**제10조** 생략

#### **부칙 <제8404호,2007. 4. 27.>(대기환경보전법)**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···· <생략> ····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···· <생략> ···· 시행한다.

**제2조** 부터 제12조 생략

**제1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<sup>18</sup> 생략**

⑯ 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호 중 “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”을 “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⑰ 부터<sup>19</sup> 생략

**제14조** 생략

**부칙** <제9433호, 2009. 2. 6.>(한국환경공단법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부터 제9조까지 생략

**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**

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중 “「한국환경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”을 “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⑩ 까지 생략

**제11조** 생략

**부칙** <제10032호, 2010. 2. 4.>(환경정책기본법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**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**

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”를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”로 하고, 제8조를 삭제한다.

③ 생략

**부칙** <제10034호, 2010. 2. 4.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10893호, 2011. 7. 21.>(환경정책기본법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부터 제4조까지 생략**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⑯ 까지 생략**

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「환경개선특별회계법」을 「환경정책기본법」으로 한다.

⑱ 부터⑳ 까지 생략

**제6조** 생략**부칙** <제11263호, 2012. 2. 1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제1항 단서, 제14조,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 중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부분, 제19조제5항, 제33조제1호,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13조(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)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(제37조제1항제3호로 한정한다)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**부칙** <제11862호, 2013. 6. 4.>(화학물질관리법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부터 제10조까지 생략**제1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**

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을 「화학물질관리법」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·금지물질"을 각각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·금지물질"로 한다.

⑨부터㉙ 까지 생략

**제12조** 생략**부칙** <제12464호, 2014. 3. 18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13886호, 2016. 1. 27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)**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으로 본다.

**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**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9조"를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9조"로 한다.

②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0호 중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"을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"로 한다.

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9호 중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조제2호"를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조제2호"로 한다.

④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제6호 중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"을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"로 한다.

**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**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### **부칙** <제14532호, 2017. 1. 17.>(물환경보전법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**제6조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** ①부터 <61>까지 생략

<62>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"을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"으로 한다.

제15조제2호 중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을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"를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"로 한다.

<63>부터 <89>까지 생략

**제7조** 생략

#### **부칙** <제15656호, 2018. 6. 12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·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

행한다.

**제2조(적용례)**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** <제15841호, 2018. 10. 16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,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

**제2조(행정처분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)**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